

『공동수신안테나 설치관련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1675
------------	------

발의년월일 : 2008. 4. 17 .
발 의 자 : 문 인 수 의 원
외 20인

1. 주 문

- 공동수신안테나 설치와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1항에서 "공동주택(주택법시행령 제15조의 20세대이상)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에프엠(FM)라디오 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87조 제4항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의 용도에 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기준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파트, 연립 등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거주자는 가정용 수신안테나 설치 또는 종합유선방송 신청 없이 텔레비전방송 시청이 가능하나,
-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에는 실질적으로 1개 건물에는 여러 세대가 거주하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의 공동수신안테나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87조 제4항에서 공동주택 등의 공

동시청안테나 설치에 대하여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으로 되어 있어 가정용 수신안테나 설치 또는 종합유선방송 신청 없이 텔레비전방송 시청이 불가능함에 따라

- 안산시에서는 2008. 1. 17 건설교통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일부개정 건의를 공무원 제안으로 건의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는 "규모 및 건설, 공급, 관리방식이 다른 단독주택에까지 공동수신안테나 및 부속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과도한 건축규제로 생각할 수 있는 바, 국민편의 증대를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채택된바 있습니다.
- 따라서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 거주자는 가정용 수신안테나 설치 또는 종합유선방송을 신청하여 텔레비전방송을 시청할 수밖에 없어 건축주의 공동수신안테나 설치비용 부담에 비해 다수의 입주자가 수입이 낮은 서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유선방송을 신청하여 텔레비전방송 시청에 따른 비용 부담이 훨씬 더 가중되는바, 건축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과도한 건축규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다수 입주민의 텔레비전방송 시청비용 부담 감소효과가 훨씬 크므로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에 공동수신안테나를 설치도록 하여 별도의 가정용수신안테나 설치 또는 종합유선방송신청 부담 없이 텔레비전방송 시청이 가능하도록 공동수신안테나 설치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 제안이유

- 안산시는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의 제2표 주택의 종류, 연건평 및 거주가구수별 주택에 의하면 세대수는 총 139,862세대이고, 이중 단독주택은 17,813세대이다. 단독주택 중 5가구이상이 9,216(7가구이상 포함)세대로 51.73%이고, 7가구이상도 6,415세대로 36.01%를 차지하고 있고,
-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부분 수입이 낮은 서민들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수신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정용수신안테나 설치 또는 종합유선방송을 신청해 텔레비전방송을 시청해야 하므로 서민주거시설이 오히려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늘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 위 1, 2 항의 근거는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의 제2표 주택의 종류, 연건평 및 거주가구수별 주택에 근거 공동수신안테나 설치비용은 206,720원이지만 종합유선방송을 신청했을 때 수신료는 696,729원으로 단독주택 거주자가 공동주택거주자에 비해 텔레비전방송 시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 1, 표 2 참조)

<표 1>

주택종류별 가구수

기 관	주택(세대)	단독주택 가구수	5가구이상	7가구이상	5가구이상 기회비용	7가구이상 기회비용
경기도	2,609,620	490,709	58,942	27,850	4,456,015천원	2,105,460천원
안산시	139,862	17,813	9,216	6,415	696,729천원	484,974천원
성남시	197,185	38,322	7,739	3,034	585,068천원	229,370천원
부천시	203,164	23,255	6,657	2,173	503,269천원	164,278천원

* 종합유선방송 수신료 8,800원, 공시청방송 수신료 2,500원, 차액 6,300원

(예 9,216가구 × 6,300원 × 12개월 = 696,729천원)

* 조건 : 5가구 또는 7가구 이상의 가구 중 한 가구가 공시청방송수신을 하기 원한다고 가정 했을 때 소요되는 기회비용을 산출한 것이다.

* 5가구이상에는 7가구이상도 포함된 가구수이다.

<표 2> 안테나 설치비(2008년도 표준품셈 기준)

- 조립 설치 : 통신설비공(0.50명/대당) + 보통인부(1.00명/대당)
- 노임 단가 : 통신설비공(104,351원), 보통인부(60,547원)
- 자 재
$$\left\{ \begin{array}{l} \text{공청안테나3단 } (H/L/UHF) - AL : 82,000\text{원}/1EA \\ \text{안테나믹서기 } (UH/HL) : 12,000/1EA \end{array} \right.$$
- 안테나 1대 설치비 수식
 - = (통신설비공×인건비) + (보통인부×인건비) + (자재비)
 - = (0.50×104,351) + (1.0×60,547) + (82,000+12,000)
 - = 52,175 + 60,547 + 94,000
 - = 206,720원(일 원 단위 절사)

『공동수신안테나 설치관련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안산시의회 의원일동은 주로 서민들이 주거하는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에 대하여 가정용 수신안테나 설치 또는 종합유선방송을 신청하지 않고도 텔레비전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공동수신안테나 설치관련 규정의 개정을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 공동수신안테나 설치와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1항에서 "공동주택(주택법시행령 제15조의 20세대이상)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에프엠(FM)라디오 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87조 제4항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의 용도에 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기준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파트, 연립 등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거주자는 가정용 수신안테나 설치 또는 종합유선방송 신청 없이 텔레비전방송 시청이 가능하나,
-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에는 실질적으로 1개 건물에는 여러 세대가 거주하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의 공동수신안테나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87조 제4항에서 공동주택 등의 공동수신안테나 설치에 대하여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공동시청안테

나를 설치하는 경우)으로 되어 있어 가정용 수신안테나 설치 또는 종합유선방송 신청 없이 텔레비전방송 시청이 불가능하여

-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중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 거주자는 가정용 수신안테나 설치 또는 종합유선방송을 신청하여 텔레비전방송을 시청할 수밖에 없어 건축주의 공동수신안테나 설치 비용 부담에 비해 다수의 입주자가 수입이 낮은 서민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용수신안테나 설치 또는 종합유선방송을 신청하여 텔레비전 방송 시청에 따른 비용 부담이 훨씬 더 가중되는바, 건축주의 건축 비용 부담보다는 오히려 다수 입주민의 텔레비전방송 시청비용부담 감소효과가 훨씬 크므로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에 공동수신안테나를 설치토록 하여 별도의 가정용수신안테나 설치 또는 종합유선방송신청 부담 없이 텔레비전 방송 시청이 가능하도록 공동수신안테나 설치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합니다.

2008. 4. 25 .

안산시의회의원 일동